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및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변화에 혁신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3조 ~ 제4조)
- 다.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9조)
- 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5조)

제정조례안: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미작성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1. 3. 12.(금) ~ 2021. 4. 1.(목) [20일 간]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1. 4. 2.(금)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인구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및 방법
3.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 대표 및 관계자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거나 파주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거나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임신·출산, 양육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사업
2. 일자리, 주택, 교육, 복지,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사회활동 장려 사업 등 안정적인 노후 환경 조성 사업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 등
5.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단의 운영을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시민이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대한 교

육, 홍보, 공모,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홍보하는 책자나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제13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지원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개인·기업·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과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 940-4953
입안자	기획예산과장	천 유 경
	정책팀장	김 정 은
	담당자	류 은 선

□ 관계법령발췌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 2. 29.>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협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2012. 5.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5. 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 1. 18., 2012. 5.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2. 5. 23.>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23.>

[전문개정 2008. 2. 29.]

제24조 삭제 <2008. 2. 29.>

제25조 삭제 <2008. 2. 29.>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1-13		
자치법규명	「과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복지7급 정지은
주 관 부 서	기획예산과	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	행정8급 류은선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0. 3. 9.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14			
정책명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류은선	전화번호	031-940-49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21년 03월 11일</p> <p>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p> <p>(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p> <p>기획예산과장 귀하</p>				

